

「2023년 반도체 시장·기술 컨설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충청북도와 우리원은 도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『2023년 반도체 시장·기술 컨설팅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, 해당 컨설팅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3월 10일
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

1 지원개요

- 가. 사업목적 : 충북 도내 반도체 관련 중소·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, 시장·기술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
- 나. 지원규모 : 11개사 정도
- 다. 지원금액 : 기업당 30,000천원 한도 ※VAT 별도 / 결과평가 후 지급
- 라. 지원분야 :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**맞춤식**으로 지원 ※2페이지 지원내용 참조
- 마. 지원기간 :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~ '23. 11. 30. 이내

2 신청대상

- 가. 지원조건 : 지원금의 10% 이상 기업 자부담(전액 현금 부담)
- 나. 지원대상 :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**본사, 공장(사업장)***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**반도체**** 관련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하는 **권소사업**

*부가가치세법 제6조(납세지), 동법 시행령 제8조(사업장)에 근거하여 '사업자등록증'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

**반도체 설계(팹리스)·후공정(PKG/TEST)·소재부품장비·기타 업체 대상

다. 컨소시엄 구성

1. **(신청기업)**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컨설팅지원 희망 중소기업
2. **(공급기업)** 해외 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 및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기업
 - 컨설팅 공급기업 자격요건
 - 사업자 설립일이 3년 이상(공고일 기준)
 - 국내 기업대상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
 -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하고,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※7페이지 붙임1 참조

3 지원내용

가. 지원분야 :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

-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항목을 한도(30,000천원)에 맞게 신청 가능

구분	지원분야	주요 내용	지원한도
1	경영·기술	- 기업 경영 전반진단, 기업 성장목표 및 전략 수립 등 - 반도체 관련 제품/기술 기획 컨설팅 등	최대 20백만원
2	시장·기술 조사	- 국내외 반도체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조사, 시장진출 전략 도출 등	최대 10백만원
3	IP	-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,기술가치평가 등 IP 연계 컨설팅 및 출원비용 지원 ※ 사업기간 내 출원 1건이상 필수	최대 10백만원
4	인증	- 인증 관련 컨설팅 및 발급비용 지원 (에너지 효율, ESG, ISO시리즈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KC, UL, KS 등) ※ 여러 인증 중복 가능하며, 상기 외 건은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판별	최대 10백만원

※ 컨설턴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컨설팅 분야의 적합한 산업계·학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자율 매칭 (필요시 과기원과 협의)

※ 평가위원회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될 수 있음

※ 지원분야 **선택 시 유의사항**

▷ 본 지원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, 반도체 부문 비중이 낮은 기업의 경우,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함

4

신청절차 및 방법

가. 신청기간 : 공고일 ~ '23. 4. 20.(목) 까지
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

① 온라인 등록

(<http://bizon.cbist.or.kr>)
 ※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
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

⇒

② 직접 방문 제출

※ 아래 제출서류 방문 제출

1. **(온라인)**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명 클릭하고,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
2. **(오프라인)** 기간 내 직접방문 제출(우편·택배 접수 불가)

접수처 :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, 1관 603호

다. 제출서류(사본 원본대조필 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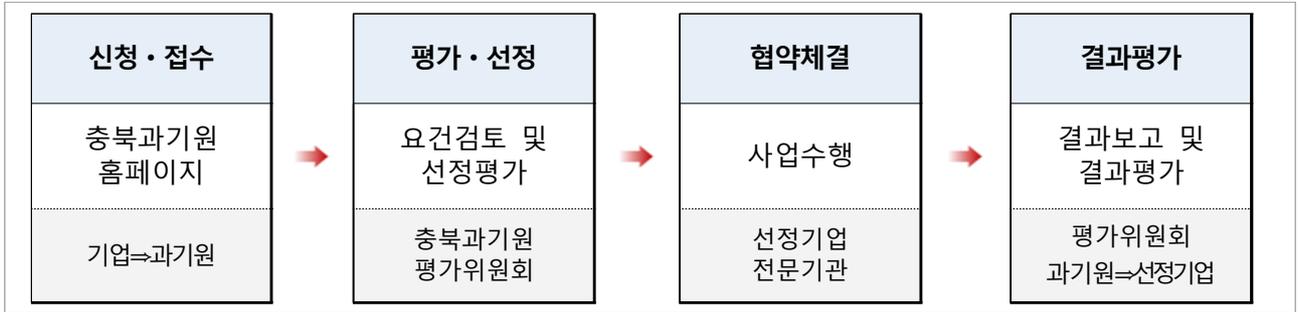
순번	제출서류	제출부수	제출대상	비고
1	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	원본 1부	신청	첨부1
2	사업자등록증(필요시 공장등록증)	사본 1부	신청/공급	-
3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	각 1부(원본 1)	신청/공급	-
4	서약서	각 1부(원본 1)	신청/공급	첨부2
5	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	각 1부(원본 1)	신청/공급	첨부3
6	중복지원(신청)제한 약약서	원본 1부	신청	첨부4
7	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¹⁾	사본 1부	신청	-
8	컨설팅 실적증명원 *사본 별도첨부	원본 1부	공급	첨부5
9	증빙서류(컨설턴트 자격증빙 등)	원본 1부	공급	첨부6
10	컨설턴트 4대보험 가입증명서	원본 1부	공급	-
11	예산책정 증빙서류(인건비, 특하인증 견적서 등)	사본 1부	공급	-
-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업 신청자 책임				

라. 제출요령

1. **(온라인)** 제출서류 1~11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**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**
2. **(오프라인)** 제출서류 1~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(A4, 단면)하여 무선(본드접착)제본이나 바인더, 링제본이 아닌 **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**

1) 2021~2022년도 재무제표 제출 원칙이되, 2022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0~2021년도 재무제표 제출

마. 선정절차



바. 평가방법 및 기준

- (평가방법)**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→ 선정평가 수혜기업 신청서류(지원신청서 등)에 대해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(100점만점 기준)에 따라 평가
- (평가기준)** 선정평가 시 평가지표(지원 필요성, 지원내용의 적정성, 구체성, 기대효과 등) 반영하여 최종 수혜기업 선정

5 유의사항

가. 신청제외대상

- ▷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(수요·공급), 신청기업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-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, 기술료납부, 잔액 및 환수금) 불이행
 -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·지방세 및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,000% 이상인 경우
- * 부채 사유 증빙자료 제출 시,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 여부 판단 예정
- ▷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·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
- ※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

나. 사업비 편성시 인건비, 운영비 계상 불가(신청기업에 한함)

다. 부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

- ※ 지원비용은 수행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, 계약서, 영수증 등에 표기된 금액 기준(부가세 제외) 산정
- ※ 지원기업 선정 후 지원 기간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
- 라.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함
- 마. 사업수행계획은 기업과 전문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, 컨설팅 신청과제의 성격, 수행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투입기간(시간), 기업의 현업 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며,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바.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,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
- 사.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- 아. 지원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하며, 성과보고회 관련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자. 지원사업 선정 후 불이행 또는 수행결과 미흡·부실의 경우, 지원금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차. 착수금 또는 선금은 지급하지 않으며, 결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등급 산정 및 후속사항 조치 가능

평가등급		평가등급 판정기준	후속조치
성공	우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균점수 90점 이상 •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(집행금액) 지급
	보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균점수 70점 이상 •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, 향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	
실패	실 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균점수 70점 미만 •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저조하고,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 지급 제외 및 제재조치

6

세부 추진일정

신청서 접수	▶ 신청·접수(기업⇒과기원)	~'23. 4월
↓		
선정평가 및 결과통보	▶ 서면평가(요건검토) : 과기원 ▶ 선정평가 : 평가위원회(과기원) ▶ 선정통보 : 과기원⇒선정기업	'23. 5월
↓		
사업 2자간 협약체결	▶ 과기원 ⇔ 선정기업	'23. 5월내
↓		
사업 착수 및 수행	▶ 사업수행 : 선정기업, 공급기업	~'23. 10월
↓		
사업 결과 보고	▶ 보고서(결과보고서, 컨설팅보고서) 및 증빙서류 제출 : 선정기업, 공급기업	'23. 11월
↓		
결과평가	▶ 결과평가 : 평가위원회(과기원)	'23. 11월
↓		
지원금 지급 및 성과보고회	▶ 지원금지급 : 과기원⇒선정기업 ▶ 성과보고회 : 과기원, 선정기업, 공급기업 등	'23. 12월 말

※ 지원기관별 일정에 따라 시행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

문의처

□ (문의처)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디지털사업부

- T. 043-931-2944 / E. wndus9966@cbist.or.kr

※ 주소: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층 기업성장지원팀

붙임 1

중소벤처기업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

등급	경력 기준	계(원)	경력 추가인정 기준
특급	·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985,000	· 박사학위 소지자 : 경력 6년 인정 · 석사학위 소지자 : 경력 2년 인정 ·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: 경력 6년 인정 · 경영·기술지도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 등록증 보유자: 경력 3년 인정
1	·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834,000	
2	·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757,000	
3	·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644,000	
4	·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518,000	
5	·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	388,000	

- *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의 경우 기업 진단/지도/컨설팅 3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동일 기준 적용
- * 경력 추가인정 기준의 적용 : 학력과 자격 보유 시 중복 적용. 단, 복수 학력 또는 복수 자격의 경우 상위 기준만 적용
- * (예시) 박사+기술사→12년(중복인정), 박사+석사→6년(상위 인정), 기술사+지도사→ 6년(상위 인정)